

## 우리나라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와 지원 방안

최영신\*

###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출소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형자가 구금 시설에서 일정 기간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사회에 재적응하는 일련의 사회복귀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처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이 어떤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단계 별로 현행 수형자 처우실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 단계별 처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은 1) 구금시설 내 단계, 2)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 3) 지역사회 재통합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형자 사회복귀 관련 처우는 1단계인 구금시설 내 처우에만 치중되어 있고,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2단계와 3단계의 처우는 매우 빈곤한 상태이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히 출소준비처우가 강화되어야 하며, 가석방보호관찰의 원호 기능 강화, 사회적응 취약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 처우의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처우가 사회 내에서 연속성을 갖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기관의 협력체계가 작동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처우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위형 범죄자집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수형자, 출소자, 사회복귀과정, 수형자 처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정보호연구센터장, 교육학박사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수형자의 대부분은 결국 사회로 복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간의 증감이 있지만, 1년에 석방되는 성인수형자는 25,000명 정도에서 30,000명 전후이다.<sup>1)</sup> 대부분의 수형자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재발을 위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며, 직업이 없고 생계를 위한 자금 없이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 가석방자나 만기출소자는 가족과 생활세계에 마주치면서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출소자의 취업과 직업 유지, 적절한 주거공간의 확보, 가족관계의 회복, 자녀양육,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유지 등은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귀와 관련된 이러한 많은 요인들은 출소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느냐, 혹은 다시 재범을 하게 되느냐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교정국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형기종료, 가석방, 감호기간 종료, 가출소, 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출소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복역률<sup>2)</sup>을 조사하였는데,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교도소에 재복역하는 비율이 23.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법무부 교정본부 자료). 우리나라의 출소자 재복역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지만,<sup>3)</sup> 출소자의 재복역율에 비추어 같은 기간 동안 출소자의 재범으로 인해 유죄선고를 받는 재범율은 훨씬 높을 것이 분명하다. 수형자의 사회복귀 실패로 인한 재범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는 범죄자 개인의 필요와 함께 사회의 필요가 균형을 맞추어야

1) 최근 10년 동안 수형자에 대한 통계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석방수형자는 1999년에 33,785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후 증감을 보이다가 2004년도에 31,292명, 2005년도에 29,169명, 2006년도에 25,045명, 2007년도에는 22,85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교정본부자료 참조).

2) 출소자 재복역율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형기종료, 가석방, 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3) 일본의 2000-2002년 출소자의 출소 후 3년 이내 재복역률은 33.2%, 미국의 94년 캘리포니아주 등 15개 주립교도소 출소자의 출소 후 3년 이내 재복역율은 25.4%, '98-99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 교도소 출소자의 출소 후 2년 이내 재복역율은 38.1%이다(교정본부 자료 참조).

하는 상호 연관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필요는 명백한 것으로서 대중은 우선적으로 안전에 관심을 갖는다. 일반 시민들은 사회에 복귀하는 범죄자들이 “안전”하고 지역사회에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공기관이 보증해주길 바란다. 한편 사회에 복귀하는 범죄자는 구금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게 된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출소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원체계가 부실해 지는데, 이는 범죄자들의 사회적응과정에서 취약성으로 작용한다. 출소한 범죄자들이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지는 일정부분 그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복귀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를 해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기 때문이다(Taxman, Young, & Byrne, 2002: 28-30).

범죄자의 사회복귀 실패는 재범의 악순환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일 출소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출소 후 일정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보장할 수 있다면, 범죄자의 재범율은 현저하게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단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개인적 문제로 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단지 개인적 문제로 맡겨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위협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자의 사회복귀는 사회의 필요와 범죄자의 필요가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과정이므로 공공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대한 관심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기존의 수형자에 대한 사회복귀 처우는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 감소와 공공의 안전에 중점을 두기보다 각 기관의 운영상 필요나 여건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교정 및 보호관찰 영역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법원 등 개별적인 형사정책기관들은 수형자의 사회복귀 처우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 기관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즉각적이고 관행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근본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 결국 수형자의 사회복귀 처우에서 연계성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은 수형자 자신, 형사사법기관, 그의 가족, 고용주, 피해자, 그리고 주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 글에서는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과 관련된 처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수형자들이 원활하게 사회복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일련의 사회복귀과정에서 처우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수형자들이 원활하게 사회복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 처우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 논의될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사회복귀과정의 단계 구분: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하는 사회복귀과정은 범죄자의 필요를 중심으로 보아 어떤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가? 사회복귀과정의 각 단계에서 범죄자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2. 사회복귀과정의 단계별 처우: 사회복귀과정의 각 단계에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처우는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내 처우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수형자의 처우 프로그램은 출소 후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가?
3. 사회복귀과정 처우의 개선방안: 현행 수형자 대상 사회복귀과정의 처우는 각 단계 별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각 단계별 처우는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가?

## II. 미국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 모델

### 1. 미국의 수형자 사회복귀 협력체계 모델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매우 일천한 단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수형자가 구금시설에 구금된 이후로부터 지역사회에 재통합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서구의 경우에도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가 풍부하게 축적된 상태가 아니며, 실무적인 수준에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내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현행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미국의 수형자 사회복귀 협력체계(Reentry Partnership Initiatives: RPI)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귀과정의 단계와 협력체계 모델을 이용한다. 이 모델은 현행 우리나라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의 단계와 과정을 이해하고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틀로 활용되었다.

미국 연방 법무성의 형사사법 프로그램 사무국(the Office of Justice Program: OJP)에서는 범죄자의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전반적인 사회복귀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주도해 왔다. 수형자 사회복귀 협력체계(Reentry Partnership Initiatives: RPI)는 미국 연방 법무성 형사사법 프로그램 사무국(OJP)이 주도한 범죄자의 사회복귀체계 개발을 위한 시범 사업의 하나이다. 수형자 사회복귀 협력체계(RPI)는 범죄자의 사회복귀과정을 실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형사정책기관, 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 집단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다. 형사사법 프로그램 사무국(OJP)은 8개 시범 지역의 사회복귀 협력체계(RPI)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sup>4)</sup>

(그림 1)<sup>5)</sup>에 제시된 수형자 사회복귀 협력체계(RPI)의 사회복귀과정 모델은 미국 형사사법 프로그램 사무국(OJP)이 8개의 사회복귀 협력체계(RPI)의 시범 지역에서 경

4) 수형자 사회복귀 협력체계(RPI)가 시범 실시된 8개 지역은 1)Baltimore, Maryland, 2)Burlington, Vermont, 3)Columbia, South Carolina, 4) Kansas City, Missouri, 5) Lake City, Florida, 6) Las Vegas, Nevada, 7) Lowell, Massachusetts, 8) Spokane, Washington이다.

5) (그림 1)에 제시된 모델은 구금 이후 사회에 복귀하는 고위험 청소년에게 집중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한 Altschuler & Armstrong(Altschuler, David M. , and Armstrong, Tory L., 1991, "Intensive Aftercare for High-Risk Juvenile Parolees : Issues and Approaches in Reintegration and Community Supervision", Intensive Interventions with High-Risk Youth : Promising Approaches i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edited by Troy L. Armstrong, Criminal Justice Press.)에 의해 개발된 모델과 비슷하다. Altschuler & Armstrong은 사후관리가 시설에 들어가는 순간 시작되고, 사회복귀를 위해 가족과 청소년 대상자가 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는 동안 그리고 복귀하는 기간 동안 중단 없이 감독과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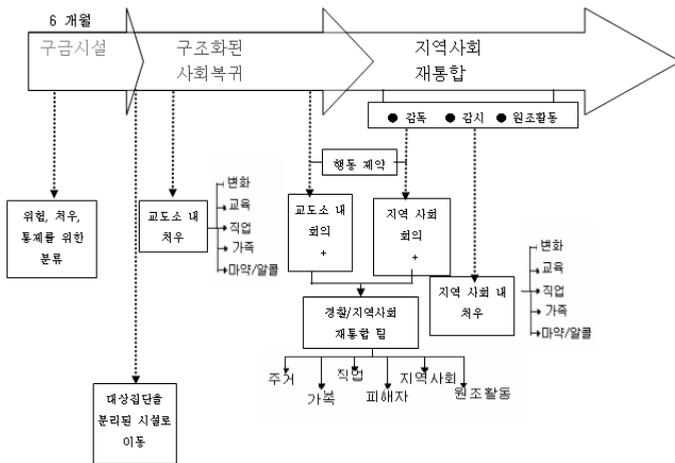
험한 결과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사회복귀과정을 이행하기 위한 구조적 틀을 제시한 것이다. 이 모델에는 사회복귀과정의 단계와 협력체계가 제시되어 있다(Taxman, Young, Byrne, Holsinger & Anspach, 2002: 9).

## 2.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와 특징

〈그림 1〉의 수형자 사회복귀과정 모델은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주요 단계와 특징을 보여준다. 사회복귀과정은 서로 구분되지만 상호 연결된 세 개의 단계로 구성된다. 구금시설 내 단계,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가 그것이다. 사회복귀과정의 세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Taxman, Young, Byrne, Holsinger & Anspach, 2002: 10-12).

### 가. 1단계: 구금시설 내 단계

구금시설 내 단계에서 범죄자들은 평가되고, 분류되고, 적절한 보안수준의 시설에 배치된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범죄자의 필요에 맞추어 직업, 교육, 처우 프로그램에 배치된다. 우리의 관점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재소자가 교도소에



〈그림 1〉 사회복귀과정의 단계화 협력체계 모델

수용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방향이 지어져야 한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재소자 분류와 배치체계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교정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사회복귀과정이 제시하는 문제의식은 교도소내의 즉각적인 실용적인 관심과 사회 안전의 확보와 재범억제라는 장기적인 목표 사이에 균형을 갖는 것이다. 교정부문이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언제 시작하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처음 단계의 목표는 범죄자의 위협, 필요, 능력에 대한 타당하고 체계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개별적인 처우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최근 자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회복귀 협력체계(RPI) 시범 지역은 범죄자가 가석방이나 만기 석방이 되기 몇 달 전에 이 과정을 시작했다. 이것은 사회복귀에서 구금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집중하는 것이다.

#### 나. 2단계: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

일단 개인이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가 확정되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구조화된 사회복귀과정은 교도소 내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에서 석방 후 처음 한 달 혹은 그 이상 유지된다. 이 기간은 점차적으로 석방을 위해 집중적인 준비를 하고, 재통합 계획의 기본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격식을 갖추어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단계의 목표는 지역사회에 복귀할 때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다. 핵심 계획은 첫째로 석방 이후 마주치는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음식, 거주지, 재정적 지원의 합법적인 출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필요에 대한 확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형기간이 긴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된다.

석방을 위한 준비는 대체로 범죄자를 이들이 복귀해야 하는 지역사회 가까스로 이동시키고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처우 프로그램에 이들을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촉진된다.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실제적인 지역사회 상황에서 새로운 행동을 미리 연습하고,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민감해지도록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석방 전에 범죄자들은 지역사회 감독 기관의 담당자, 서비스 제공자, 경찰, 피해자 지원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과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과 만난다. 몇몇 사회복귀 협력체계(RPI) 지역은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의 대표가 사회복귀과정에 후견인의 자격으로(워싱턴주), 지원자(메릴랜드주), 또는 배상 패널로서(버몬트주, 미주리주) 개입하도록 하였다.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 동안 범죄자는 특히 우선적으로 감독, 서비스에의 참여, 계약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되는 제재를 명확하게 정하는 행동계약에 서명한다. 석방 후에 이들은 가능한 빨리 같은 사례 관리팀과 만난다. 그들은 함께 재평가하고, 지역사회에서 처음 30일 동안 안정을 찾기 위하여 사회복귀 계획을 수정, 보완한다.

### 다. 3단계: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

사회복귀과정의 세 번째 단계는 석방 후 두 번째 달에 시작하고 감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에서는 석방 초기에 만들어진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쪽으로 중점이 이동한다. 사회복귀 계획을 재확인하고 유지하고, 공식적인 사례관리 과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것으로 이동한다. 전통적으로 범죄자의 지역사회 재통합에 대한 책임은 가석방이나 보호관찰소와 같이 자원이 빈약한 공식적인 감독 기관에 있었다. 사회복귀 협력체계(RPI)는 이러한 책임을 협력관계에 있는 여러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공유하도록 재편성을 지원해준다. 비정부 서비스기관, 가족 구성원, 지역 주민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정기관 중심의 접근에서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진다. 동시에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경찰 등과 같은 공식적 사회통제기관은 다른 형태의 지원을 협력자로 활용하는 쪽으로 역할을 바꾼다. 전통적인 사회통제기관은 여전히 범죄자를 보호하지만, 가족이나 지역 주민, 고용주, 다른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 보충적인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활용한다.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것이든지, 이 단계에서는 모든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토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는 광범위하게 범죄자의 변화 전략을 합동으로 시도한다. 자원은 직업기술, 가족이나 개인상담, 약물남용처우, 주거지원, 건강관리가 필요한 범죄자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진다. 조건부 석방자의 경우, 이 단계의 프로그램에는 공식적인 감독과 통제 활동이 포함된다. 만기석방자의 경우, 감독과 통제 책임은 지역사회 경찰관, 자원봉사자인 후견인, 배상 패널, 다른 이웃대표에게 있게 된다. 지역사회 조직과 대표가 협력하여 일함으로써 협력관계의 참여자들은 범죄자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공동체적인 존재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사회복귀과정의 단계와 특성은 미국적 상황과 여건에 의해 구성된 것이지만, 우리나라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의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준거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 모델을 준거로 하여 현행 우리나라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와 과정을 분석하여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기로 한다.

### Ⅲ. 우리나라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와 처우 실태와 문제점

#### 1. 우리나라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 구분

우리나라의 수형자 사회복귀 관련 처우를 미국의 사회복귀 협력체계 모델에 따라 구금시설 내 단계,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수형자의 사회복귀 관련 처우는 주로 제 1단계인 구금시설 내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 2단계, 제 3단계의 처우는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형자 대상 사회복귀 처우가 교도소를 중심으로 구금기간 동안에 집중되고, 사회내 처우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공식적인 형사사법기관을 중심으로 교도소의 구금시설 내 처우와 보호관찰소의 사회 내 처우로 양분되어 있고, 범죄자가 구금시설에서 사회로 이동할 때 두 처우의 연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범죄자 사회복귀 협력체계(RPI)에서 구분하고 있는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의 세 단계에 근거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두 번째 단계인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와 세 번째 단계인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의 처우가 매우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의 처우는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진 처우가 사회 내에서 연속성을 갖고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 유관기관의 협력체계가 작동해야 하는 처우이며, 출소 후의 기본적인 생계대책으로서 주거, 직업, 가족, 피해자 등과 관련된 문제를 출소 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출소 준비 처우에 해당한다. 또한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는 출소한 수형자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출소준비 상황과 출소 직후 상황에서 세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는 처우 단계이다.

## 2. 구금시설 내 단계에서의 처우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나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처우라고 할 수 있다. 구금시설 내에서 실시되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크게 일반적 처우 프로그램과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주는 일반적 처우 프로그램으로는 교도작업, 직업훈련, 학과교육관련 프로그램, 심성순화 프로그램, 교화상담 등이 있고,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으로는 귀휴, 사회봉사 및 사회견학, 가족만남의 날 및 가족만남의 집 등이 있다(최영신 외, 2007).

교정시설 내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들이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수형자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출소에정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참여했던 교정교화 프로그램 중에서 사회복귀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프로그램은 귀휴, 사회견학,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사회봉사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가족이나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많은 프로그램이다. 또한 종교행사, 학과교육, 직업훈련은 사회복귀에 일정한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고, 교도작업, 집단상담은 사회복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 정신교육, 약물치료 프로그램, 개별상담에 대해서는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평가를 하였다.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경험과 사회복귀와의 관련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출소에정자의 70% 정도는 교도작업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며, 2가지 형태 이상의 다양한 교도작업에 참여해본 출소에정자도 거의 40% 수준에 이르지만, 교도작업이 장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전체 출소에정자의 1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이 출소 후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던 출소에정자는 전체 출소에정자의 1/4 정도 수준이며, 직업훈련 경험자의 60% 이상은 다양한 이유로 직업훈련 종목과 관련된 직종

을 선택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직업훈련 직종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서 ‘실제 기술이 부족해서’, ‘취업가능성이 낮아서’와 같은 요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직업훈련 종목의 개선이나 직업훈련의 질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직업훈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최영신 외, 2007: 181-182).

현재 교도소 내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각각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개별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수형자와 교도소 당국 사이에 관점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에서의 처우와 문제점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는 교도소 내에서 출소를 위해 집중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부터 출소 후 처음 한달 혹은 그 이상 동안의 시기를 지칭하는데, 이 단계의 처우는 지역 사회에 재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안정된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행 우리나라 수형자 처우에서 이 단계에 해당하는 처우로는 석방예정자교육, 가석방자의 결정 및 처우 개시, 출소예정자 사전 면담 및 갱생보호 처우 대상자의 결정과 처우 개시 등이 해당한다.

석방예정자교육은 [수용자 인성교육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만기석방예정자교육은 형기종료 1개월 전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sup>6)</sup>, 교육기간은 3일간 전일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석방예정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예정자교육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최소한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석방예정자교육이 만기석방예정자와 가석방예정자 모두에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방예정자교육은 출소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출소예정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맡겨지기 때문에 일부 출소예정자는 석방예정자교육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석방예정자 중에는

6) 교육대상자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형기종료 2개월 전인 수형자와 함께 교육반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수형자인성교육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가석방 결정이 출소일에 임박하여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출소 전에 가석방예정자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7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시한 석방예정자교육의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만기출소자의 경우에는 90.5%(12,499명)가, 가석방출소자의 경우에는 67.4%(4,449명)가 석방예정자교육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석방예정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난다(최영신 외, 2007: 86). 석방예정자교육의 교육기간과 내용이 실질적인 석방준비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물론이고, 적어도 교도소에 일정기간 구금되었던 수형자가 출소할 때 받아야 하는 출소준비교육이 모든 출소예정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가석방의 결정시기의 조정, 출소준비교육의 의무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수형자의 가석방 비율은 30-35% 정도인데, 가석방자의 대부분은 형집행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형집행율이 90% 이상인 경우가 44.5%, 80-89%가 50.2% 정도로써 전체 가석방 대상자의 95% 정도는 형집행율이 80% 이상이다. 결과적으로 잔형기가 4개월 이하인 가석방자가 전체 가석방자의 87.5%를 차지하며, 5개월 이상 1년 이하가 11.5%를 차지한다(최영신 외, 2007: 86-88). 이처럼 가석방은 형집행율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단순히 구금시설에서의 처우 기간을 단축시키는 처우로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석방 처우는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회적응을 지원해주는 사회내 처우로서 자리매김이 필요해 보인다.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처우 또한 가석방자의 잔여형기가 너무 짧아 실제로 보호관찰 부과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05년까지는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불요 심사기준'이 잔형기가 2개월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호관찰 부과율은 매우 낮은 상태였으며, 2006년부터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불요 심사기준이 잔형기 1개월 미만으로 조정되면서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부과율이 65.4%로 높아지게 되었다(최영신 외, 2007: 94). 그러나 여전히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처우는 매우 형식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2003년에 21.8%, 2004년에 23.2%, 2005년에 37.1%임(법무부 보호국 범죄예방정책과 자료).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갱생보호 처우는 대개 출소예정자 사전면담을 통해 처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처우 희망자가 파악되는데, 출소예정자 사전면담은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갱생보호공단의 전담인력의 부족, 교정당국의 무관심 등으로 수형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개별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면담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수형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갱생보호처우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최영신 외, 2007: 99).

#### 4.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에서의 처우와 문제점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의 처우는, 미국의 모델에 의하면, 석방 후 두 번째 달에 시작하여 감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는 처우로서 석방 초기에 만들어진 생계기반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출소자에 대한 현행 사회복귀과정과 관련된 처우로서 이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처우로는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처우와 갱생보호 처우를 들 수 있다. 현행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처우는 범죄자에 대한 감독 기능에 치중되어 있고, 갱생보호 처우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 처우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처우는 보호관찰의 주요 관심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중 가석방 보호관찰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 정도로 낮고 재범율도 낮은 상태이다. 가석방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처우는 대상자의 행동과 환경을 관찰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지도와 감독에 집중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적 성격의 원호 기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적 성격의 원호 기능은 한국갱생보호공단과 민간갱생보호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출소자들의 갱생보호 처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갱생보호 처우의 현실적인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소예정자들은 출소 후 숙식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갱생보호처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현실적으로 갱생보호처우가 출소자라는 낙인을 다시한번 부

여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갱생보호처우가 출소자의 필요와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수형자 사회복귀 협력체계 모델은 지역사회 재통합단계에서 전통적으로 공식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했던 보호관찰소 등이 주로 담당했던 역할의 비중을 낮추고, 비정부 서비스기관, 가족 구성원, 지역 주민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시한다.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경찰 등과 같은 공식적 사회통제기관은 하나의 협력자로서 다른 형태의 지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역할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관점을 전환하도록 하는데 적절한 준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V. 논의 및 결론 :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방안

수형자가 구금시설에서 일정 기간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사회에 재적응하는 일련의 사회복귀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에 관련된 처우 중에서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먼저 ‘수형자의 사회복귀과정에서 단계별 처우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가석방 및 갱생보호 처우 관련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처우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고위험 범죄자집단의 관리 및 감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1. 사회복귀과정의 단계별 처우의 개선방안

현행 수형자 대상 사회복귀 관련 처우를 사회복귀과정의 세 단계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제 1단계인 구금시설 내 처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형자에게 개별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분류처우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수형자 대상 교정처우는 보안관리나 수용질서 유지에 치우쳐 분류처우보다 누진처우를 위주로 운영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형자의 필요에 따라 구금시설 내 단계에서부터 개별화된 처우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누진처우보다 분류처우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외에 구금시설 내 단계에서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외부 통근작업의 확대 실시, 직업훈련체계의 정비와 사회자원의 연계 강화, 사회적 처우(귀휴, 사회봉사, 사회견학, 가족만남의 날 등)의 확대 시행, 구금시설 내 민간참여 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구조화된 사회복귀 처우’ 단계는 수형자의 출소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기로서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출소 준비 교육의 시행과 수형자의 출소 계획에 대한 조정 및 개입이 필요한 단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형자 사회복귀 관련 처우에서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연계시켜주는 출소준비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두 처우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수형자가 구금시설에서 사회로 이동하는 전환기에 형사사법기관이 주축이 되어 ‘구조화된’ 개입이 필요한데, 그러한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형자 중에서 일부만이 가석방보호관찰대상자가 되며, 이들 또한 대부분의 대상자가 3개월 미만 동안 보호관찰 처우를 받기 때문에 매우 형식적인 수준의 처우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갱생보호처우 역시 극히 일부 수형자가 개인적 수준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구조적인 한계를 갖는다. 적어도 일정한 조건에 놓여 있는 출소예정자의 경우에 갱생보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된 출소자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재범이나 장기간의 복역생활로 인해 출소 후에 가족과의 유대나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 집단에 대해서는 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 출소자 중 사회적 취약집단을 특별관리하여 주거와 취업 계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들에게 갱생보호 처우를 연결시켜 주는 등 장기간에 걸쳐 사회재통합 과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인 지역사회재통합 단계는 형사사법기관, 유관기관, 지역사회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가석방보호관찰처우는 재범 위험 집단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석방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를 체계화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동시에 가석방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성격의 원호 처우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갱생보호 처우와 가석방자의 보호관

찰처우가 연계되어 출소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원호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 처우에서는 숙식제공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인 향상시키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내실화하고, 갱생보호사업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우를 개선하여야 하며, 민간의 갱생보호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2. 가석방 및 갱생보호 처우의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범죄자 사회복귀 협력체계(RPI) 프로그램에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를 경찰, 시설내 교정, 지역사회 교정, 공적·사적 서비스 제공자로 구분하고, 이 네 집단의 행위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다(Byrne, Taxman, & Young, 2002). 이 모델에 의하면 범죄자가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할 때 범죄자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찰, 시설내 교정, 지역사회 교정, 공적·사적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의사결정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협력관계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사회복귀과정의 의사결정과정의 각 주요 지점에서 고유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가석방 처우와 갱생보호 처우는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와 ‘지역사회재통합 단계’의 처우에 모두 해당하는 처우로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수형자의 가석방제도는 가석방의 심사방법, 가석방 심사 결정시기, 가석방대상자의 인원 규모와 잔여 형기 등에 따라 다른 유관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가석방 심사와 보호관찰 필요여부 심사의 중복 문제, 가석방대상자의 잔여형기가 짧아 내실있는 보호관찰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 가석방대상자의 결정이 출소일에 임박하여 결정됨으로써 가석방 출소자들이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출소 준비를 하지 못하는 문제 등은 가석방제도가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먼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와 보호관찰 필요여부 심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가석방심사와 보호관찰필요여부심사를 일원화하여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가석방 대상인원의

확대는 가석방보호관찰 처우의 역할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호관찰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가석방 심사의 결정 시기는 수형자의 출소 준비 교육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교도소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가석방제도의 운영은 교도소, 보호관찰소, 한국갱생보호공단, 지역사회내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유관기관 사이에 협력관계 구축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갱생보호처우는 공법인인 갱생보호공단이 주축이 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조직 내에 갱생보호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소극적인 감독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서 원활한 업무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출소자에게 갱생보호 처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형자가 출소 준비 단계에서 갱생보호 처우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주 및 취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현재 갱생보호공단의 출소예정자 대상 사전면담은 집단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출소자의 개인적 필요나 요구와 만나지 못하고 있다. 수형자들 중에는 갱생보호에 대하여 전혀 모르거나 부정적인 관점을 표시하는 경우도 상당 수준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상태이다. 우선 정부조직 차원에서 출소자의 갱생보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조직 및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갱생보호사업 규모의 핵심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숙식제공 갱생보호시설의 처우인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법인 사이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외에 범죄자가 출소하여 사회에 재적응해야 하는 맥락에서는 공식적인 형사사법기관의 통제보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비공식적인 통제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은 미미한 상태이지만, 향후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비공식적인 통제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범죄자의 사회복귀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역할과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교정보호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요구된다. 보호관찰소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교정보호기관으로서 범죄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3. 사회안전을 위한 고위험 범죄자집단의 관리 및 감독 기능 강화

최근 우리나라의 수형자 인원규모는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재범자와 장기수형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재범이 우려되는 위험집단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의 경우만 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만을 공유하고 있으며, 구금시설 내에서 축적된 수형자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은 독자적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범죄자를 관리하므로 낭비적 요소가 많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상당기간 위험 집단에 대한 감독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범죄자를 관리하는 조직 간에 협력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중범죄자의 증가와 재범의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영국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군의 관리를 위해 ‘공공보호협정(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MAPPA)’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데(NOMS, 2006; Home Office, 2005), 이러한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은 재범 위험집단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의 ‘공공보호협정’(MAPPA)은 주로 성범죄자, 폭력범죄자 및 기타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보호협정(MAPPA)’에서는 경찰,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등은 책임 있는 기관이 되어, 범죄자의 구금기간 중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보호협정(MAPPA)’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 전략을 세우고 향후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영국의 ‘공공보호협정(MAPPA)’과 같은 협력체계 모델은 고위험집단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모델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철(2003).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21호.
- 김혜정(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영규(2006). 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와 누진처우, 교정연구 제33호, 7-33.
- 법무부(2006). 보호관찰통계연보.
- 이정봉(2004). 현행가석방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24집, 359-394.
- 전정주(2005).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27, 137-166.
- 정진연(2004).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 교정연구, 23.
- \_\_\_\_\_ (2003). 가석방제도와 관련된 제문제의 검토, 교정연구, 20, 147-185.
- 조흥식(2004).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갱생  
보호공단.
- 최영신, 홍영오, 이법호, 정영진, 이창한, 김안식(2007).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azemore, G., & Stinchcomb, J. (2004). A Civic Engagement Model of Reentry:  
Involving Community Through Service and Restorative Justice, Federal  
Probation, Vol. 68, No. 2, Sept.
- Burke, P. & Tonry, M.. (2006). Successful Transition and Reentry for Safer Communities,  
Center for Effective Public Policy, supported by the JEHT Foundation, MD., U.S.
- Butterfield, Fox. 2002. Study Finds Big Increase in Black Men as Inmates Since 1980,  
New York Times, August 28.
- Byrne, J. M., & Taxman, F. S.(2004). Targeting for Reentry: Inclusion/Exclusion Criteria  
Across Eight Model Programs, Federal Probation, 68(2), 53-62.
- Byrne, J. M., Taxman, F. S. & Young, D.(2002). Emerg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Reentry Partnership Initiative: New Ways of Doing Business.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unpublished Report.
- Home Office(2004). 'Supporting People' Guidance for the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 Home Office(2005). NOMS Corporate Plan 2005-06 to 207-2008.
- NOMS. 2006.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Working together to reduce re-offending.
- NPS. [www.probation.homeoffice.gov.uk](http://www.probation.homeoffice.gov.uk).
- Robinson, G., & Peter R. (2006). "The future of rehabilitation; What role for the probation service?". *Probation Journal* Vol. 53(4). pp. 334-346.
- Taxman, F. S, Young, D., Byrne, J., Holsinger, A., & Anspach, D. (2002). From Prison to Public Safety: Innovations in Offender Reentry.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unpublished Report.
- Taxman, F. S, Young, D., & Byrne, J.(2002). Offender's Views of Reentry: Implications for Processes, Programs and Services.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unpublished Report(IJCX0045)
- Taxman, S.(2004). The Offender and Reentry: Supportion Active Participation in Reintegration, *Federal Probation*, 68(2), 31-34.
- Young, D., Taxman, F., S & Byrne, J.(2002). Engaging the Community in Offender Reentry.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unpublished Report. Document No. 196492.

## Treatment by Stages in the Reentry Process of Prisoners

Choi, Young-Shin<sup>\*</sup>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reatment by stages in the reentry process should be provided to prisoners and prison-based treatment and community-based treatment should be linked in order to prevent reoffending and to support the successful reentry of releasers from prison.

Based on 'Reentry Partnership Initiatives(RPI)' model in U.S.A., Reentry treatment system fall into three distinct but intertwined phases: institutional, structured reentry, and community reintegration. The focus of the reentry treatment is mainly lied in the 1st phase (institutional stage) while the 2nd and 3rd phases remain inactive in Korea. This is due to the reentry treatment being focused on imprisonment period without intimate interconnection with the community-based treatment. Above all it is a big problem that the pre-release education remains poor.

Treatment by stages in the reentry process must be improved. ① institution stage: specific classification for individual treatment, extension of the work release and the social treatment, enhancement in vocational training system, collaborative involvement of community resources and the civic groups in the correctional facility, ② structured reentry stage: systematic and structured pre-release education, ③ community reintegration stage: making intensive partnership among the key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community. At the same time, it's necessary to enforce the initiative model such as '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MAPPA)' to supervise and control the high-risk criminals for public safety.

---

<sup>\*</sup>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Education

❖ Keywords : prisoner, releaser from prison, reentry process, prisoner treatment